

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
제2차 정례회 보건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

2018. 1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보건·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8년 11월 28일  
보건·복지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6일

나. 제출자 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

보건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18. 11. 28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다문화가족에 대한 해외거주 친정부모 초청과 창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다문화가족 해외거주 친정부모 초청 지원 근거 마련
- 2) 다문화가족 창업 지원(창업교육 등) 근거 마련

3)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19년 본예산 반영 예정(※ 소요예산 : 35,000천원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협의사항

1) 입법예고(2018. 9. 19. ~ 10. 9.)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김동영)

가. 개정 취지

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해외거주 부모 초청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,

나. 주요 개정내용

○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

-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창업 지원

-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
-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음.

#### 다. 종합의견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,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, 의료서비스 지원,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,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, 아동교육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, 개정안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됨.
- 다만, 부모 초청이나 모국방문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,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경제력, 기존 방문 이력 등 지원요건을 엄격히 검토·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※ 강서구 다문화가족 현황

(2018. 7월 기준, 단위 : 명)

구분	총계	동북아 (중국,조선족, 일본 등)	동남아 (베트남,필리핀, 태국 등)	중앙 아시아	북미 (미국,캐나다)	유럽 (러시아,영국 등)	기타
계	3,563	2,766	489	28	121	59	100
남	860	711	14	2	56	30	47
여	2,703	2055	475	26	65	29	53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**□ 다문화가족지원법**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